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78

발의연월일: 2021. 3. 22.

발 의 자: 송언석·구자근·권명호

김성원 · 김용판 · 김정재

박덕흠 • 서병수 • 윤창현

임이자 · 정진석 · 정희용

조수진 • 태영호 • 한무경

허은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, 공공주택사업자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공사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제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관한 내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 도록 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·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,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수 있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결과 그 내용이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.
-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, 실태조사 및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	제9조(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
방지대책) ① ~ ③ (생 략)	방지대책) ① ~ ③ (현행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
	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
	런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
	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	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
	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
	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
	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 대
	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
	<u>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
	따른 실태조사 또는 부동산 거
	래 내역 조사 결과 그 내용이
	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
	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
	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
	주기, 실태조사 및 부동산 거래
	내역 조사의 절차·방법 등에
	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령으로 정한다.